

## ○ 캐나다 - 2021년 예산안 발표

-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2021년 4월 19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함<sup>1)</sup>
- 온라인 상거래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비거주자 기업이 캐나다 내 온라인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캐나다 과세 당국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서비스세(DST)의 시행을 제안함<sup>2)</sup>
  - 특정 연도에 캐나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2천만캐나다달러<sup>3)</sup> 이상의 매출 (revenue)이 발생하고, 그 직전 연도에 7억 5천만유로<sup>4)</sup> 이상의 글로벌 수익이 발생한 사업체들이 디지털서비스세의 납부 대상임
  - 캐나다의 온라인 마켓, 소셜 미디어, 온라인 광고를 비롯하여, 온라인 인터페이스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의 판매나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에 대해 3%의 세율로 부과됨
  - 12개월 동안 캐나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제품 혹은 서비스 매출이 3만캐나다달러<sup>5)</sup>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거주자 공급자 및 유통 플랫폼 운영자는, 간소화된 GST/HST 프레임워크에 등록하고 과세공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
    - 본 프레임워크에 등록된 공급자는 부실 채권 및 주별 HST 즉시 환급액에 대해 구매자에게 공제할 자격이 있음
  - 플랫폼 운영자는 GST/HST에 등록되지 않은 공급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고 납부해야 하는데, 이때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

1) Government of Canada, "Budget 2021", <https://www.budget.gc.ca/2021/report-rapport/toc-tdm-en.html>, 검색일자: 2021. 4. 20.

2) News IBFD, "Canada - Canada to Impose 3% Digital Services Tax Pending Action at OECD", April 21, 2021, [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linkresolver/static/tns\\_2021-04-21\\_ca\\_5%23tns\\_2021-04-21\\_ca\\_5%23tns\\_2021-04-21\\_ca\\_5%23tns\\_2021-04-21\\_ca\\_5](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linkresolver/static/tns_2021-04-21_ca_5%23tns_2021-04-21_ca_5%23tns_2021-04-21_ca_5%23tns_2021-04-21_ca_5), 검색일자: 2021. 4. 27.

3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억 1,280만원임.

4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55억원임.

5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,022만원임.

- 공급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 부과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공급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공동 및 연대 책임이 부여되나,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의 정보에 타당하게 의존한 경우 그 책임이 제한됨
- 2021년 6월 18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, 수용 가능한 다자간 접근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임

■ **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, 장애세액공제, 북부 주민 공제 등 각종 공제혜택을 확대함**

- 저임금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세제(Canada Workers Benefit: CWB)의 공제 상한액과 순조정소득의 임계값<sup>6)</sup>은 단독가구의 경우 각각 1,381캐나다달러<sup>7)</sup>와 1만 3,064캐나다달러<sup>8)</sup>에서 1,395캐나다달러<sup>9)</sup>와 1만 3,194캐나다달러<sup>10)</sup>로, 가족의 경우 2,370캐나다달러<sup>11)</sup>와 1만 7,349캐나다달러<sup>12)</sup>에서 2,403캐나다달러<sup>13)</sup>와 1만 7,522캐나다달러<sup>14)</sup>로 인상됨
- 장애세액공제(Disability Tax Credit: DTC)는 2021년 기준으로 1,299캐나다달러<sup>15)</sup>가 적용되며, 세액공제 자격 중 일상 기능에 필요한 정신 기능과 생활 유지 치료의 범위를 넓혀 대상자를 확대함
- 과세연도 기간 중 캐나다 북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여행한 경우 북부 주민 공제(Northern Residents Deductions)를 청구할 수 있음
  - 지불한 총경비와 최저 왕복항공료 등이 공제 대상이며, 연간 최대 2회의

---

6) 캐나다의 근로장려세제는 3천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1캐나다달러당 26센트가 공제되고, 순조정소득이 특정 임계값에 이르면 공제 비율이 감소함.  
 7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5만원임.  
 8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,751만원임.  
 9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7만원임.  
 10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,769만원임.  
 11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8만원임.  
 12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,326만원임.  
 13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22만원임.  
 14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,349만원임.  
 15) 2021년 4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4만원임.



